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8. 2. 15.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 로 붙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8년 2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환 구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8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6조).
-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기준에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추가하고 전조등의 정비를 원할시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도록 규정함(별표 1).
- 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별표 1).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추가하여 자동차 정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인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을 "등록기준" 으로 정비함.
- 별표 1에서는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된 자동차정비업 시설 기준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의 경우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추가하고, 전조등시험기는 전조등의 정비를 원할 경우만 갖추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가스 자동차 정비시 안전교육이수 및 소화기를 갖추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07. 4. 6「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고 2007. 7. 7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되는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대하여는 2007. 6.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7. 12. 8 시행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시설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가스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사전 안전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설 및 작업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는 3월 이내 개정사항에 적합한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내용의 미숙지로 관련 업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언론홍보 또는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충분한 계도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